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510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신태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강신옥

변론 종결 2018. 9. 21.

판결 선고 2018.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4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4572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5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한다)에 관하여 2005.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2.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은 2012.10. 12.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명령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7. 10. 11. 별지 기재와 같은 수정명령(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혼인 중이던 2005.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제5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1. 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고있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과 같아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등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캐나다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캐나다 법원의 이 사건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받았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판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우리나라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이에는 상호 서로의 판결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88므191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사정을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된 후 이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내용이 그 이전의 사정을 이유로 이미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 부동산 목록

- | | | |
|-------------|--|-------------|
| 1.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5,693㎡ |
| 2.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1,970㎡ |
| 3.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3,197㎡ |
| 4. 제주도 서귀포시 | | 임야 3,349㎡ |
| 5. 충북 충주시 | | 전 2,049㎡ 끝. |

브리티쉬컬럼비아주
밴쿠버등기소
2017년 11월 2일
등재

법원 파일번호: E100006

법원등기소: 밴쿠버

브리티쉬컬럼비아주 대법원

신청인: A

피신청인: B

신청에 의거한 판결

판사보 C (연장)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2017년 11월 2일 밴쿠버에서의 심리를 위하여 통지 없이 제출된 A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변호사인 D를 심리한 바,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1. 2017년 10월 11일 본 소송에 내려진 판결은 2017년 10월 11일 내려진 판사 E의 판결에 따른 재산인 "제주 재산"의 일부로서 한국(남한) 제주도 서귀포시 F에 위치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정된다.

아래 당사자들은 본 판결의 양식을 승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동의에 의해 내려지는 것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판결의 각각에 동의한다.

A의 변호사 D의 서명: (서명필)

법원 (판사보 서명필)

등기관 (서명필)



브리타니컬럼비아주
밴쿠버등가소
2017년 10월 23일
등재

법원 파일번호: E100006
법원등가소: 밴쿠버

브리타니컬럼비아주 대법원

신청인: A
피신청인: B

신청에 의거한 판결

판사 E의 연전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2017년 10월 11일 밴쿠버에서의 심리를 위하여 제출된 A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대표하여 출석한 D를 심리한 바, 그리고 정당히 송달되었지만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바,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1. 2012년 10월 12일 본 소송에 내려진 판결은 아래와 같이 보정된다:

- a) 한국(남한) 제주도 서귀포시 G, H, I, J, K, L, M 및 N에 위치한 재산들(이하 "제주 재산")은 즉시 매도를 위해 내놓을 것이며 신청인은 매도를 단독으로 진행한다.
- b) 한국(남한) 춘주시 O에 위치한 재산(이하 "O 재산")은 즉시 매도를 위해 내놓을 것이며 신청인은 매도를 단독으로 진행한다.
- c) 신청인은 "제주 재산"의 구매를 위한 일차 선의 청약을 현재 평가원 가치의 2분의 1 이상으로 승낙할 것이다.
- d) 신청인은 "O 재산"의 구매를 위한 일차 선의 청약을 현재 평가원 가

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승낙할 것이다.

2. “제주 재산” 과 “O 재산” 을 매도를 위해 내놓고 매도 계약을 완료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서명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양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제주 재산” 과 “O 재산” 의 매도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피신청인의 서명이 실시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서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2017년 9월 18일 제출된 신청 통지 제 4항은 일반적으로 중단된다.

5. “제주 재산” 과 “O 재산” 의 순 매각대금 전액은 신청으로 D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D는 신청인에게 순 매각대금의 절반을 지불하여야 하고, 전액은 본 소송에서의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지불되어야 한다.

6. 비용

아래 당사자들은 본 판결의 양식을 승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동의에 의해 내려지는 것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판결의 각각에 동의한다.

A의 변호사

D의 서명: (서명필)

법원

등기관 (서명필)





Court File No.: E100006
Court Registry: Vancouver

In the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Claimant:

Respondent:

ORDER MADE AFTER APPLICATION

BEFORE MASTER } Thursday, the 2nd day of
November, 2017

ON THE APPLICATION of without notice coming on for hearing at Vancouver on November 2, 2017 and on hearing , counsel for the Claimant;

THIS COURT ORDERS that:

1. The Order made in this action on October 11, 2017 is amended to include the property located at , Seogwiposhi Chejudo, Jeju Island, South Korea as part of the "Jeju Property", property subject to the Order of Mr. Justice made October 11, 2017.

THE PARTIES APPROVE THE FORM OF THIS ORDER AND CONSENT TO EACH OF THE ORDERS, IF ANY, THAT ARE INDICATED ABOVE AS BEING BY CONSENT:

Signature of
[x] lawyer for

By the Court,

Registrar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REGISTRY**
OCT 23 2017
ENTERED

Court File No.: E100006
Court Registry: Vancouver

In the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Claimant:
Respondent:

ORDER MADE AFTER APPLICATION

BEFORE MR. JUSTICE } Wednesday, the 11th day of
October, 2017

ON THE APPLICATION of coming on for hearing at Vancouver on October 11, 2017 and on hearing appearing on behalf of the Claimant and no one appearing on behalf of the Respondent, although duly served,

THIS COURT ORDERS that:

1. The Order made in this action on October 12, 2012 is amended as follows:
 - a. The properties located at , , , , and , Geogwiposhi Chajudo, Jeju Island, South Korea (the "Jeju Property"), will be listed for sale forthwith, with the Claimant having sole conduct of sale.
 - b. The property located at Choongju City, South Korea (the " Property"), will be listed for sale forthwith with the Claimant having sole conduct of sale.
 - c. The Claimant will accept the first bona fide offer for the purchase of the Jeju Property at or above one-half the current assessed value.
 - d. The Claimant will accept the first bona fide offer for the purchase of the Property at or above one-half of its current assessed value.
2. The signature of the Respondent be dispensed with for the purposes of listing the Jeju Property and Property for sale and completing the contract of sale.
3. The signature of the Respondent be dispensed with and the Claimant be able to execute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sale of the Jeju Property and Property on behalf of both the parties.
4. Paragraph 4 of the Notice of Application filed September 18, 2017 is adjourned generally.

MR

Page 2

- THE PARTIES APPROVE THE FORM OF THIS ORDER AND CONSENT TO EACH OF THE ORDERS, IF ANY, THAT ARE INDICATED ABOVE AS BEING BY CONSENT:

By the Court.

Register